

공정거래 정책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사장 박 홍 전

A stylized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likely belonging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mentioned in the text.

- 목 차 -

1. 목적	-----	2
2. 적용 범위	-----	2
3. 협력사에 대한 준수사항	-----	2
1) 공정한 협력사의 선정		
2)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준수사항	-----	3
5. 공정거래 관리 체계	-----	3

1. 목적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하 “회사”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국내·해외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제정한다.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국내·해외 법인 및 지사의 모든 임원·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3. 협력사에 대한 준수사항

1) 공정한 협력사의 선정

회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선정하며, 협력사에게 사전에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회사는 새로운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경로를 안내한다. 회사는 협력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그룹에서 마련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실천지침을 준수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고, 협력사와 금품·향응·편의를 주고 받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회사는 협력사와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처음부터 설정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부당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협력사와의 계약 내용(거래 내용, 가격, 수량, 지급 기한 등)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에 발급하고, 각종 서면(계약서, 약정서, 요구서 등)을 보존 한다.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준수 사항

회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독자적으로 경영상 결정을 하여야 하며, 경쟁사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가격이나 거래조건·지급조건을 합의해 정하는 행위
- (2)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나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3)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4) 생산·용역 거래를 위한 설비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5)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6)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관리하거나 그 수행·관리할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7) 입찰 또는 경매 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비율 또는 경락가격·비율 등을 정하는 행위
- (8) 그 밖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관련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5. 공정거래 관리 체계

회사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제보 채널을 운영한다.

- 법무팀 : 공정거래 업무 지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쟁 조정, 공정거래 분야 교육
- 제보 채널 : 홈페이지 내 협력사 신고 채널, 윤리신고센터

부 칙

〈2025. 6. 16.〉 본 정책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